

동작구의회공고 제2020-9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3월 27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관내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창업 및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한편, 감염병 등 사회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구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 나. 소상공인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규정함(안 제4조)
- 다. 실태조사, 지원체계, 정보제공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제7조)
- 라. 창업, 경영안정, 특례보증의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제9조)
- 마. 소상공인지원위원회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1조~제1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 [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3, FAX : 820-1474, E-mail : jurakim@dongjak.go.kr)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창업 및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소상공인을 말한다.
2. “창업”이란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 내에서 소상공인이 되기 위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말한다.
3. “경영안정 지원”이란 소상공인의 경영과정 상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한 전반적인 경영지원을 말한다.
4.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구와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에 사업장을 두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예비창업자에 대하여는 제8조제1호 및 제8호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소상공인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안정 지원을 위하여 3년마다 소상공인 지원 계획(이하 “지원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2. 경영 및 시설개선 등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3. 선진 유통기법 교육 및 경영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4. 소상공인의 자치조직 구성 지원에 관한 사항
5.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관련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소상공인의 보호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활동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성 있는 산하기관 또는 민간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6조(지원체계)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 지원 업무를 위한 전담부서를 두어 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전담부서는 신규 창업자와 관내 소상공인의 각종 지원업무를 총괄하며,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원활한 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제공) 구청장은 소상공인 지원에 따른 성공사례 등을 전파하고 소상공인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식지를 발간할 수 있다.

제8조(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창업상담, 컨설팅, 교육 등 창업 지원
2.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지원
3.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홍보·마케팅을 위한 지원
4. 소상공인에 대한 유익한 정보 제공지원
5. 소상공인 경영안정 및 시설개선 자금 지원
6. 업종전환 또는 폐업을 하고자 하는 소상공인 지원
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사회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소상공인의 생활안정자금, 대출이자 및 동작 사랑상품권 가맹점 보전금 등 경영안정 지원. 이 경우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를 거친다.

8. 그 밖에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지원

제9조(특례보증 지원)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경영안정 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원할 경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특례보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체결하고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소상공인 관련 단체 지원) ① 구청장은 건전한 소상공인 관련 단체의 설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관련 단체가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을 위한 세무, 회계 등 전문능력개발 교육사업
2. 소상공인업체 홍보·마케팅 등을 위한 사업
3. 그 밖의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상공인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의2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소상공인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소상공인 지원 추진방향 설정 및 정책 건의에 관한 사항
3.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업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